

## 맞벌이 부부가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의사항

(국세청, 2006. 12.)
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사항들을 각 소득공제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.

구 분	주 의 사 항
배우자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.</li></ul>
부양가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</li><li>○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.</li></ul>
자녀양육비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</li></ul></li></ul>
보험료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,</li><li>-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(법인46013-3535, 1996.12.18).</li></ul></li></ul>
교육비·의료비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.</li><li>○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.</li></ul>
혼인·장례·이사에 대한 특별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맞벌이부부인 근로자(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)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혼인·장례·이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맞벌이부부 중 당해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혼인·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(서면1팀-287, 2006.3.3.).</li></ul>
주택마련저축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자 불입금액을 각각 공제</li></ul>
신용카드 등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부부의 경우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</li><li>○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준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직계준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(서면1팀-287, 2006.3.3.).</li></ul>